제5장 재산에 대한 죄

/보호법익/

- 1. 소유권: 절도죄, 횡령죄, 손괴죄, 장물죄
- 1. 전체로서의 재산권: 강도죄, 사기죄, 공갈죄, 배임죄
- 1. 소유권 이외의 물권 또는 채권: 권리행사방해죄

But 형법은 재산죄를 보호법익에 따라 분류하는 태도가 아닌 침해방법에 따라 나누는 태도를 취한다.

/ 침해방법/

- 1. 절도죄, 강도죄- 상대방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재산을 취득
- 2. 사기죄, 공갈죄- 상대방의 하자있는 의사에 의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
- 3. 횡령죄, 배임죄- 신임관계를 위배하여 재물을 영득하거나 재산상 이익 취득
- 4. 손괴죄- 재물의 효용가치 훼손

- / 객체별 구분 /
- 1.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(재물죄)
 - 절도죄, 횡령죄, 장물죄, 손괴죄
- 2. 재산상 이익을 객체로 하는 범죄(이득죄)
 - 배임죄
- 3. 재물 및 재산상 이익 양자를 객체로 하는 범죄
 - 강도죄. 사기 죄, 공갈죄
- 4.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는 범죄(영득죄)
 - 절도죄. 강도죄. 사기죄. 공갈죄, 횡령죄
- 5. 불법영득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고, 타인의 재물의 효용가치를 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(훼기죄) 손괴죄
- 6. 재물죄 모두 미수범처벌규정 있음/ 단, 장물죄, 권리행사방해죄, 점유이탈물횡령죄X
- 7. 재산범죄 모두 예비음보 처벌규정 있음 / 단, 강도죄 제외

[재물을 객체로 하는 범죄]

1. 영득죄

(1)탈취죄

- 타인소유 타인점유- 절도죄, 강도죄
- 타인소유 자기 점유- 횡령죄
- 타인소유 무점유- 점유이탈물횡령죄
- 자기소유 타인점유 권리행사방해죄

(2)편취죄

- 처분행위 필요: 사기죄, 공갈죄
- 2. 훼기죄: 영득의사 불요
 - 손괴죄

제5장 재산에 대한 죄

I. 절도죄

- § 329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§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.
- §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.
-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범죄
- 미수범 처벌
- 불법영득의사 요
- 친족상도례 적용
- 보호법익: 소유권설(통설)

- 1. 객관적 구성요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한다.
 - 1) 행위의 객체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(재물 민법상의 물건)

① 재산

- . 유체물 일정한 공간을 차지하는 물체.
- . 관리할 수 있는 동력 전기 등

[재물]

- : 관리가능성설(통설, 판례)
- 관리할 수 있으면 유체물 뿐 아니라 무체물도 재물이 된다는 견해

- < 재물의 가치는 이 중 하나만 있어도 재물성 인정 >
 - 1. 경제적 교환가치
 - 2. 주관적 가치
 - 3. 소극적 가치
- 소유, 점유의 개념의 대상
- 형법 제 346조 '관리가능한 동력 ': 전기O
- 사람의 신체, 의수,의족 X(의학실험용,학술표본용의 사체나 유골 O)
- 찢어진 어음 O, 폐지 도시구조계획변경서 O
- 애인의 사진, 편지 O
- 판례는 소극적, 주관적 가치 있으면 경제적 교환가치 인정해 줌

[재산상이익]

- : 재물 이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
- 채권, 광업권, 어업권 기타 권리
- 적극적 소극적 이익 불문-재산증가, 부채감소
- 영구적 일시적 이익 불문- 채무면제, 채무이행 연기
- 법률행위의 유효 무효 취소가능성 불문- 사기나 강박으로 인한 경우
- 1. 법률적 재산설
- 2. 경제적 재산설(판례)
- 3. 절충설

② 점유

- . 형법상 사실상의 재물지배, 재물에 대한 물리적. 현실적 작용에 의하여 인정되는 순수한 사실상의 지배관계.
- 의의 점유의사에 의하여 지배되고 그 범위와 한계가 경험칙에 따라 결정되는 재물에 대한 사람의 지배관계.
 - -객관적. 물질적 요소 사실상의 재물지배
 - -주관적. 정신적 요소 편지함에 들어 있는 물건은 투입 시 주인점유.
 - 여관서 여객이 분실한 물건은 여관주인이 점유.
 - 가게 문 열기 전 각 앞의 배달상품도 주인점유.
 - 양식장에 투입한 진주패는 양식업자 점유.
 - 사자에 대하여도 점유 계속 된다(判).
- ③ 타인의 점유 공동점유, 봉함 또는 시정된 포장물의 점유.

[점유의 타인성]

- 공동소유. 공동점유: 소유와 점유의 타인성 인정 (절도죄 성립)
-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 주인의 단독 점유 단. 고도의 신뢰관계가 있을 경우 — 종업원의 단독점유 인정 - 영득하면 횡령죄
- ex) 사람에게 은행에 단독으로 입금 시키도록 한 경우, 화물 자동차의 운전자가 운반 중 영득한 경우 一횡령죄 성립 but 철도공무원이 운반 중 화물을 처분한 때에는 -절도죄가 성립
 - 임치된 포장물의 점유
 - 전체를 영득하면: 수탁자의 점유 횡령죄(판례)
 - 내용물을 영득하면:위탁자점유 절도죄(판례)
- <통설> 순형식적 위탁관계(내용물 영득) 一, 절도죄 실질적 위탁관계(전체를 영득) 一, 힁령죄

[사자의 점유]

- 탈취의 의사를 가지고 사람을 살해한 후 그의 재물을 영득한 경우: 강도살인죄
- 살해 후 탈취의사가 생겨서 피해자의 재물을 영득 한 경우 학설 점유이탈물횡령죄
 판례 절도죄

3. 불법영득의사

- 사용절도와 일반절도죄의 구별의 기준
- 횡령죄와 손괴죄의 구별의 기준
- 권리배제의사 + 소유의사 + 경제적으로 이용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
- 사용절도는 언제나 불가벌이다 X
 - 一 자동차등 불법사용죄 성립

[사용절도의 성립요건]

- 1. 물건의 기능적훼손 없어야
- 2. 장기간 점유가 아니어야
- 3. 확실한 반환의사 있어야(원점/ 소유자 지배범위내에 반환)
- < 객관적 요건 >
- 단순한 사용
 - : 일시 사용목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 무죄
- 가치가 소멸 또는 현저히 감소된 때 ㅡ 절도죄
- 사용 후 반환 : 방치하거나 버려 둔 경우 절도죄
- < 주관적 요건>: 반환의사의 존재

2) 행위

① 절도 -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재물을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점유로 옮기는 것.

② 점유의 배제

- . 착수시기(밀접행위설)
- 절취 재물에 접근, 물색, 소매치기의 호주머니 겉 더듬을 때, 담에 붙어 갈 때, 차 안 물건 위해 차문 잡았을 때.
- ③ 점유의 취득
 - . 기수시기 접촉설, 이전설 등 취득설이 통설.

2. 주관적 구성요건

- 1) 고의 (미필적 고의도 족함)
- 2) 불법영득 고의 이외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, 확정적일 것을 요함.
 - . 영득의사의 요소
 - 있어야한다(多).
 - 적극적 요소 : 재물을 절취하여도 소유권자로서 지배할 의사가 없으면 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.

Ⅱ. 절도죄의 가중적 구성요건

1. 야간주거침입죄

§ 330 야간에 사람의 주거, 착수하는 주택, 건조물이나 선박 도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
§ 345 본죄를 범하여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다.

§ 342 미수범은 처벌한다.

- 미수범 처벌. 상습범 가중처벌. 친족간 특례. 야간 주거침입절도 누범 가중처벌

- 실행의 착수시기와 기수시기

착수시기: 주거침입 시(절도죄와 다름)

기수시기: 재물취득시

- 야간에 길가에서 문을 열고 손을 넣어 방안의 물건을 절취한 경우

: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기수

2. 특수절도죄(합동법)

§ 331

- ①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전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②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- 미수범 처벌, 상습범 가중처벌, 친족간 특례, 특가법(5인 이상, 누범, 절도목적, 단체조직)

3. 자동차등 불법사용죄(불법영득의사 불요)

§ 331조의 2

권리자의 동의 없이 타인의 자동차, 선박, 항공기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<mark>일시 사용</mark>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, 500만원 이하의 벌금,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

-미수범 처벌, 상습범 가중처벌, 친족간 특례

IV. 친족상도례

- § 344 제328조의 규정은 329조 내지 332조의 죄 또는 그 미수범에 준용한다.
- § 328 ①직계존속, 배우자, 동거친족, 호주, 가족 또는 배우자간의 제 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한다.
 - ②전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.
 - ③제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
- 직계혈족. 배우자. 동거친족. 가족관계: 형 면제
- 이외의 친족관계 : 친고죄
- 개별적으로 적용
- 강도죄와 손괴죄는 적용되지 X
- 소유자. 점유자 모두 친족일때만 친족상도례가 적용
- 친족관계의 존재시기: 행위시

제3절 강도의 죄

§ 333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-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 및 재산상 이익이 객체
- 폭행 협박의 수단 전제- 최협의의 폭행 협박
- 불법영득의 의사 요
- 친족상도례X
- 예비 음모 처벌
- 폭행협박과 재물강취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되어야

1. 강도죄의 의의

- 절도죄와의 구별 : 폭행,협박을 수단으로, 재물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이익도 객체, 친족상도례의 적용이 없다는 점.
- 강도죄의 주된 보호법익: 재산권 (자유권, 즉 의사결정과 의사활동의 자유도 강도죄의 보호법익)
- 강도죄의 보호법익이 보호받는 정도 : 침해범

2. 구성요건의 체계

- 단순강도죄(기본적 구성요건)
- 특수강도죄, 강도상해.치상죄, 강도살인.치사죄, 강도강간죄, 해상강도죄, 상습강도죄 (가중적 구성요건)
- 준강도죄, 약취강도죄(독립된 구성요건)
- 미수범 처벌, 예비.음모 처벌, 자격정지 병과

- 1) 행위 객체: 타인의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(법률적,경제적재산설 통설) (재산상의 이익: 재물 외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)
- 2) 행위: 폭행, 협박(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수 있는 정도, 최협의)
 - ① 폭행 사람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
 - ② 재산상 이익의 취득 소극설(피해자의 의사표시는 요하지 않음)이 통설
- 3) 재물의 강취
 - -폭행협박은 <u>재물강취의 수단이 되어야</u>함(시간, 장소적 관련성 필요)

4)착수기수시기

- -착수시기: 폭행협박을 개시한 때
- -기수시기: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때

2. 준강도죄

§ 335 절도가 재물의 탈환을 항거하거나 체포를 면탈하거나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한 때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.

- 신분범, 목적범, 미수범처벌, 재물만이 객체

3. 인질강도죄(유괴범)

§ 336 사람을 체포. 감금. 약취 또는 유인하여 인질로 삼아 재물 도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.

-기수시기: 석방의 대가로 재물 및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(미수범 처벌)

4. 특수강도죄(합동범)

- § 334 ① 야간에 사람의 주거, 등 침입-
 - ② 흉기를 휴대 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

5. 강도상해치상죄

- § 337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
 - 강도상해죄: 상해의 기, 미수에 따라 결정(강도의 기,미수는 불문)
 - 강도치상죄: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기수

6. 강도살인. 치사죄

- § 338 강도가 사람을 <mark>살해</mark>한 때에는-
- 강도살인죄: 살인의 기,미수에 따라 결정
- 강도치사죄: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키면 기수

7. 강도강간죄

§ 339 강도가 사람을 강간한 때에는-

-미수 기수 시기: 기,미수는 강간의 기,미수에 따라 결정

<타죄와의 관계>

- 1. 강도가 사람을 강간하여 치상 또는 치사케 한 경우
 - : 본죄와 강도치사상죄와의 상상적경합
- 2. 강도가 강간하고 사람을 살해 또는 상해한 경우
 - : 본죄와 강도살인 또는 강도상해죄의 상상적경헙
- 3. 강도가 강간한 후 살해 또는 상해 의사가 생겨 살인 또는 상해한 경우
 - : 본죄와 강도살인, 상해죄와의 경합범

제4절 횡령죄

§ 355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§ 359 미수범처벌 § 361 328, 346규정은 본장의 죄에 준용

- 취득한 재물의 가액이 **5**억원 이상인 때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
- 1. 객관적 구성요건
- 1)행위의 주체
 -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(사실상 재물 지배, 부동산 포함)
 - 민법상으로는 점유를 가지지 못하는 점유보조자도 보관자가 될 수 있다

2) 행위의 객체

- <mark>자기</mark>가 점유하는 <mark>타인</mark>의 재물

판)소유권의 귀속: 계주가 계원들로부터 징수한 계불입금은 일단 계주에게 그 소유권이 귀속된다 할 것이므로 계주가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는 성립되지X

- 이중매매와 횡령죄: 배임죄는 성립하여도 횡령죄를 구성할 여지는 X

3) 행위 (통설판례-영득행위설)

- 횡령행위: 횡령하거나 운송을 거부하는 것으로 불법영득의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

- 영득의사: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외부에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된다.

/횡령죄와 배임죄의 구별/

- 1. 권한남용설: '침해방법의 성질'에 따라 횡령행위는 사실행위, 배임행위는 법률행위라 하여 양 죄를 구별
- 2. 배신설(통설,판례): '행위의 객체'에 따라 그 객체가 횡령죄는 재물, 배임죄는 재산상의 이익 (횡령행위에는 사실행위뿐 아니라 법률행위도 포함)

- Ⅱ. 업무상 횡령죄
- § 356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,0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-'업무': 타인의 재물보관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우(창고업, 운송업,전당포업)만이 아니고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관례상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경우도 해당 (사우나에서 귀중품 보관, 유실물센터의 유류품 보관 등)
- Ⅲ. 점유이탈물횡령죄
- § 360 ①유실물.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.
 - ②매장물을 횡령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제5절. 배임죄

- § 355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 과 같다.
- -5억 이상은 특정경제범죄가중등게 관한 법률 적용
- 1. 객관적 구성요건
- (1) 행위의 주체 「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」→ 진정신분범(신의칙 관계)
 - 1) 사무처리의 내용
 - ① 공. 사적 사무
 - ② 재산상의 사무 재산상 사무에 국한설이 타당
 *판례) 타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경우,
 재산보존하는 경우→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O (의사, 변호사는 X)
 - 2) 타인의 사무처리 신의칙 의무, 타인 사무 자기 사무로서의 성질 때에도 타인 위한 것이 본질적 내용일 때**0**

(2) 행위

- 1) 배임행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판단
 - -모험거래:투기적 거래,일체금지時 배임죄,본인의 추정적 승낙이 있으면 배임죄 X
 - 사무처리에 대한 본인의 동의 →배임죄 성립
- 2) 재산상의 손해와 이익의 취득(위험도 포함)

손해 발생하여야 하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함(현실적 손해의 위험)

/이중저당, 이중매매의 형사책임/

- 이중저당이란, 갑이 을에게서 돈을 빌리고 1번 저당권을 설정해주기로 약정했으나 아직 등기가 종료되지 않음을 틈타 병에게서 다시 돈을 빌리고 저당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
 - 이 경우 갑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서 그 임무에 위배하여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고 그로 인해 을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<mark>배임죄</mark>가 성립(통,판)
 - 착수시기: 판례- 갑과 병이 매매계약체결하고 중도금 수령한 때
 - 기수시기: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마친 때
- 2. 제2매수인의 책임- 매도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면 악의의 매수인은 배임죄의 공범 또는 공동정범(장물취득죄는 성립X)
- 3. 매도인이 처음부터 을에게 소유권 이전할 의사 없이 금전 편취의 목적으로 계약 체결하고 대금수령 후 병에게 매각시 - 사기죄

Ⅲ. 업무상 배임죄

§ 356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~

IV. 배임수증죄

- § 357 ①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<mark>청탁</mark>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5년 ~ 한다.
 - ②제1항의 재물 또는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~ 한다.
 - ③범인이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.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정한다.
- 1. 배임수재죄 타인의 ~ 357① ~ 취득함으로 성립. (청탁에 재산이익취득, 처리하는 자)
- 2. 배임증재죄 357② 배임수재죄와 필요적 공범관계 (부정청탁하고, 이익공여로성립)
- *부정한 청탁 신의칙에 반하는 것.

제6절. 공갈죄

- § 350 ① 사람을 <mark>공갈</mark>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대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
- 1. 객관적 구성요건
 - 1) 행위의 객체
 - 타인이 점유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
 - 부녀와의 정교 재산상의 이익이 아니므로, 공갈하여 정교한 경우
 - : 강간죄 또는 강요죄 성립

- 2) 행위
- 폭행 또는 협박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것
- ① 폭행 강압적 폭력이고 절대적 폭력은 해당하지 않음
- ② 협박 상해고지로 공포심 일으키게 하는 것(제한없음)
- 3) 처분행위 공갈과 인과관계가 있어야!
- 2. 주관적 구성요건 고의, 불법이득 의사
- *권리행사와 공갈죄의 관계 권리남용으로 인정될 때에는 공갈죄 성립인정
- Ⅱ. 상습공갈죄
- § 351 상습으로 전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1/2까지 가중

제7절 사기의 죄

- § 347조 ① 사람을 <mark>기망</mark>하여 <u>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</u>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,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전항의 방법으로 <u>제3자</u>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.
- 미수범처벌(제352조)
- 반드시 타인소유 타인점유

[사기죄의 객관적 구성요건]

- **1.** 기망행위
- 2. 피기망자의 착오
- 3. 처분행위
- 4.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 취득
- 5. 재산상의 손해발생(판례는 부정)

- "기망행위" "착오" "처분행위"
 - 1.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함
 - 2. 처분하고자 하는 의사가 존재하여야 함
 - 3. 처분자는 처분능력이 있어야 함
 - 4. 피기망자 = 처분행위자
 - 5. 기망행위는 작위. 부작위. 명시적. 묵시적 모두 가능
 - 6. 보호법익은 '개인의 재산권 '

1. 보호법익

- -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재물.재산상의 이익을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
- -주된 보호법익은 전체로서의 재산권이나 거래의 진실성 내지 신의성실도 사기죄의 보호법익이 된다(다수설)
- 2. 행위의 객체 -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
- 3. 행 위 -기망
- 4. 피기망자의 착오

5. 처분행위

-비록 하자가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의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행위를 하거나 이를 방치하는 부작위행위를 하는 것 (작위는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고 부작위는 재산을 유지.증가시킬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)

- 6. 재산상의 손해
- **7.** 기수시기
 - (1) 동산의 경우- 교부시
 - (2) 부동산의 경우- 매도인으로부터 점유이전에 필요한 서류일체를 교부받아 등기를 종료한 때 또는 점유를 이전받은 때
 - (3) 보험사기의 경우- 보험증권의 교부시
 - (4) 소송사기의 경우- 승소판결을 받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확정판결에 기하여 허위등기의 신청을 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, 강제집행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배당받은 경우에 기수
 - (5) 구걸사기, 의연금사기- 피해자는 구제를 위해 돈을 지급했지만 가난한 사람을 구제한다는 목적이 기망으로 성취될수 없었다는 점에 손해가 인정되므로 사기죄 성립

- 9. 죄수와 타죄와의 관계
- (1)죄 수
- 1) 사기죄에 있어서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 피해자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다하더라도 포괄1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 별로 1개씩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(대판 1997.6.27.97도508).
- (2) 타죄와의 관계
 - 1) 사기행위로 재물.재산상 이익을 얻은 후,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가벌적사후행위
 - 2) 절취 등으로 영득한 장물을 자기소유인양 제3자를 기망하여 금원 등을 편취한 경우, 그 같은 기망행위가 별도의 새로운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는 별도로 사기죄 구성

- 3)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타인을 기망해서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 : 사기죄와 수뢰죄의 상상적 경합
- 4)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타인의 재물을 교부 받은 경우 : 학설은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보나, 판례는 양죄의 실체적 경합이라고.
- 5)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본인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 : 배임죄설. 사기죄설(판례), 양죄의 상상적 경합설(다수설)
- 6) 자기가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기망행위를 취득한 경우 : 횡령죄만 성립
- 7) 사기도박: 사기죄만이 정립하고 도박죄는 성립하지 않는다(우연성의 결여)